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24호, 2022. 6. 10. 공포, 2023. 12. 11. 시행)됨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제도의 도입을 위한 근무시간 면제 절차,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방법 등을 정하고,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6. 29.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교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강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근무시간 면제 절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교섭 절차에 따른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을 임용권자(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임용권자에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1. 근무시간 면제 시간
2.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

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노동조합별 조합원(법 제4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임자 수 등

④ 임용권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 산정에 관하여는 제3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공고일”은 “제2항에 따른 동의 요청일”로 본다.

⑥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조의3(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 면제시간 및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면제 사용 예정자(이하 이 조에서 “예정자”라 한다) 명단과 예정자별 사용시간을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 사용 예정자 명단과 사용 시간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명단에 있는 사람을 근무시간 면제자로 확정한다.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제4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면제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시간 면제자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근무시간 면제자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 면제자의 변경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조의4(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① 근무시간 면제자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7일 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근무시간 면제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장이 임용권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사용일시 및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면제자와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은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로 본문에 따른 신청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근무시간 면제자와 협의하여 그 사용일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의5(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자료 제출) 연간 근무시간을 전부 면제받는 근무시간 면제자(이하 제2조의6에서 “연간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임용권자가 협의하여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의 제출 시기·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조의6(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방법 등) 임용권자는 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1. 제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했거나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정한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그 결정기준
2.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연간근무시간면제자와 근무시간 부분 면제자를 구분한다)

3.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

제2조의7(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법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한 복무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복무 및 보수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8(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심의위원회 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조의9(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체 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교원 노동단체의 전직·현직 임원
2.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나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었던 사람

② 법 제1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조의10(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

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조의11(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를 “제11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근무시간 면제 절차) ①</u> <u>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5조</u> <u>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근무시</u> <u>간 면제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u> <u>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u> <u>조에 따른 교섭 절차에 따른다.</u> <u>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5</u> <u>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근무</u> <u>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을 임용</u> <u>권자(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교</u> <u>원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u> <u>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로 정</u> <u>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u> <u>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임용권자</u> <u>에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u> <u>1. 근무시간 면제 시간</u> <u>2.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u> <u>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동</u> <u>의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u> <u>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원</u> <u>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u> <u>“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u> <u>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u> <u>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u>		

한도”라 한다)를 넘지 않는 범
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노동조합별 조합원(법 제4조
의2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임
자 수 등

④ 임용권자는 제3항제1호에 따
른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확
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을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자료 제공
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노동조합
별 조합원 수 산정에 관하여는
제3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노동조
합의 대표자”로, “공고일”은 “제
2항에 따른 동의 요청일”로 본
다.

⑥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임용권

<신 설>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조의3(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면제 사용 예정자(이하 이 조에서 “예정자”라 한다) 명단과 예정자별 사용시간을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 사용 예정자 명단과 사용시간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명단에 있는 사람을 근무시간 면제자로 확정한다.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제4항에 따른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무

<신 설>

시간 면제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시간 면제자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
항을 준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근무시간 면제자
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업
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시간 면
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 면제자의 변경을 노동
조합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조의4(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
용 절차) ① 근무시간 면제자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7일 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학교
의 장(근무시간 면제자가 근무
하는 학교의 장이 임용권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사용일시 및 업무내용을 포함하
여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신
청을 해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면제자와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은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로 본문에 따른 신청 기한

<신 설>

<신 설>

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근무시간 면제자와 협의하여 그 사용일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의5(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자료 제출) 연간 근무시간을 전부 면제받는 근무시간 면제자(이하 제2조의6에서 “연간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임용권자가 협의하여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의 제출 시기·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조의6(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방법 등) 임용권자는 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신 설>

<신 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1. 제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했거나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정한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그 결정기준

2.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연간근무시간 면제자와 근무시간 부분 면제자를 구분한다)

3.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

제2조의7(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법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한 복무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복무 및 보수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8(심의위원회 위원의 위

<신 설>

촉) 심의위원회 위원은 「경제
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
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
촉한다.

제2조의9(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1
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체 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심의위원
회의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
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
는 교원 노동단체의 전직·현
직 임원
2.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
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
는 사람
3.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나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
었던 사람

<신 설>

② 법 제1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조의10(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

<신 설>

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조의11(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 근로시간 면제

제8조(구제신청 접수에의 통보) 노동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다른 시행령과의 관계) ① (생략)

②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11조제1항제4호,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2까지,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9조(다른 시행령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1조의2 -----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제10호	-----
· 제12호 · 제13호 · 제14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
법」 제96조제1항제3호만 해당	-----
한다) · 제17호 · 제18호는 적용	-----
하지 않는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연 락 처	(044) 202 - 7981